

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이진환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91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7.

발 의 자 : 이진환, 전해연, 박경원,
박윤옥, 이경숙, 한근수,
정현미, 김지훈(민)

1. 제안 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‘새내기도약휴가’를 신설하여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 ‘새내기도약휴가’ 신설(안 제14조제10항)
- 나.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와 중복규정 삭제(안 제14조제8항)
- 다. 준용규정 신설(안 제18조)
- 라. 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사항 반영(안 별표3)

3. 일부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6. 관련법령 : 가. 「지방자치법」

나. 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

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8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
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공
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른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및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를 준용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

(제14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출 산	배우자	20
	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	25
입 양	본인	20
사 망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자녀의 배우자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· 외조부모	3
	배우자, 자녀	7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탈 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
[비 고]

입양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하고,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특별휴가) ① ~ ⑦ (생략)	제14조(특별휴가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시 일(日)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,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	<삭 제>
⑨ (생략)	⑨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른다.
<신 설>	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를 준용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신상민

☑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☑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<생략> ② 제1항에서 “재직기간”이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, 연월일수(年月日數)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, 휴직기간·정직기간·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

1.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
2.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
3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(이하 “공무상 부상등”이라 한다)으로 인한 휴직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